

순천대학교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규정

제정 1995. 8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대학원·단과대학, 학과(부) 또는 전공 및 부속 기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가 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·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(이하 "타 기관"이라 한다)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의 선정) ① 협정 대상 기관은 학문적 업적이 축적되고 연구 시설 및 제반 여건을 갖추고 교류시 이 대학교의 학문연구·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다.

② 타 기관과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체결은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③ 미수교 특정 국가 기관과의 협정 체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제3조(파견 및 초청) ① 이 대학교와 자매결연 및 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기관(이하 "협정기관"이라 한다)간에 파견 또는 초청되는 교직원·학생의 자격 등을 협정서에 의한다.

② 이 대학교와 협정기관간의 교직원·학생의 파견 또는 초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③ 파견 및 초청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학점의 인정) 학생이 협정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.

제5조(어학 능력) 이 대학교와 협정 기관간의 파견 또는 초청되는 교직원·학생의 어학 능력은 협정서에 의하며, 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6조(경비 지원) 이 대학교 협정 기관간의 파견 또는 초청되는 교직원·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은 협정서에 의하며,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.

제7조(한국학 프로그램) ① 이 대학교가 초청하는 협정 기관의 교직원·학생에게 한국의 문화·역사·한국어교육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학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정 기관의 교직원·학생을 위한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등은 협정서에 의하며, 이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6. 8. 2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타 기관과의 협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.